

경상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6호

# 2024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4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5일

경상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 1 선발예정인원 : 1,272명

### 가.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계급	직렬(직류)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계			1,226명	
8급	간호(간호)	일반	35명	경북도1, 경주3, 김천3, 안동4, 구미2, 상주2, 의성1, 청송3, 영양1, 청도2, 고령2, 성주2, 칠곡1, 울릉8
		장애인	1명	상주1
	보건진료(보건진료)		18명	포항4, 김천1, 안동1, 영주1, 상주1, 의성2, 청송2, 영양1, 영덕1, 예천1, 봉화1, 울진2
9급	행정(일반행정)	일반	363명	포항13, 경주15, 김천14, 안동36, 구미14, 영주27, 영천27, 상주28, 문경6, 경산13, 의성25, 청송9, 영양11, 영덕14, 청도11, 고령10, 성주9, 칠곡6, 예천26, 봉화14, 울진12, 울릉23
		장애인	24명	경북도의회2, 구미시의회1, 영주시의회2, 상주시의회4, 의성군의회4, 청송군의회3, 영양군의회1, 영덕군의회2, 고령군의회1, 칠곡군의회1, 예천군의회1, 봉화군의회2
		저소득층	68명	경북도4, 포항3, 경주3, 김천3, 안동5, 구미2, 영주3, 영천6, 상주1, 문경3, 경산1, 의성5, 청송2, 영덕2, 청도3, 고령2, 성주2, 칠곡3, 예천2, 봉화6, 울진4, 울릉3
	세무(지방세)	일반	34명	경주1, 안동1, 구미4, 영주4, 영천2, 상주1, 문경1, 의성2, 청송2, 영양3, 영덕3, 청도3, 고령1, 칠곡1, 예천1, 봉화1, 울진1, 울릉2
		장애인	8명	구미1, 영주1, 영천1, 영덕2, 청도1, 성주1, 예천1
		저소득층	1명	영주1
전산(전산)	일반	16명	경북도1, 포항2, 안동1, 구미2, 상주2, 의성2, 청송1, 청도1, 칠곡1, 울진1, 울릉2	
	장애인	2명	포항1, 청송1	

계급	직렬(직류)		선발 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일반	70명	경북도1, 포항5, 경주3, 김천3, 안동7, 구미7, 영주3, 영천3, 상주1, 경산5, 의성8, 청송5, 영양1, 영덕1, 청도1, 고령1, 성주1, 칠곡3, 예천3, 봉화2, 울진2, 울릉4	
		장애인	20명	경북도1, 포항2, 경주2, 김천2, 안동2, 영주2, 상주1, 경산1, 의성1, 청송1, 영덕2, 청도1, 예천1, 울진1	
		저소득층	10명	포항2, 경주1, 안동1, 구미1, 의성1, 청송1, 고령1, 울진1, 울릉1	
	사서 (사서)	일반	10명	경북도1, 포항2, 경주1, 김천1, 상주2, 의성2, 청송1	
		장애인	2명	포항2	
	숙기(숙기)		2명	경북도의회1, 구미시의회1	
	방호 (방호)	일반	2명	경주1, 안동1	
		보훈청추천	2명	청도1, 울릉1	
	공업	일반기계		20명	포항3, 경주3, 김천3, 안동2, 구미1, 영천1, 상주3, 청송1, 봉화1, 울릉2
		농업기계		1명	울진1
		일반전기		20명	포항3, 경주1, 안동3, 구미1, 영주1, 영천1, 상주3, 경산2, 의성1, 영덕2, 울릉2
		일반화공		12명	경북도1, 포항3, 경주1, 김천1, 안동1, 영주1, 영천2, 의성1, 고령1
	농업	일반농업	일반	48명	경북도1, 포항2, 경주1, 김천2, 안동3, 구미1, 영주5, 영천8, 상주2, 문경2, 의성3, 영양3, 영덕3, 청도4, 고령1, 성주1, 칠곡2, 예천1, 봉화1, 울진2
			장애인	10명	경주1, 안동1, 영주1, 상주1, 의성2, 영양1, 영덕2, 예천1
		축산	18명	안동2, 영주1, 영천1, 상주2, 문경1, 의성2, 영양1, 청도1, 고령1, 예천2, 봉화1, 울진1, 울릉2	
	녹지	산림자원	일반	23명	경북도1, 경주1, 구미3, 영주2, 영천1, 의성1, 영덕1, 청도4, 예천1, 봉화1, 울진2, 울릉5
			저소득층	1명	청도1
		산림보호		3명	안동1, 영천1, 청송1
		조경		5명	영주1, 영천1, 의성2, 예천1
	해양수산	일반해양		5명	경북도1, 포항1, 울진1, 울릉2
		일반수산		4명	경북도2, 포항1, 영덕1
선박항해		2명	영덕2		

계급	직렬(직류)		선발 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9급	보 건 (보 건)	일 반	35명	경북도1, 김천2, 안동4, 구미2, 영주4, 상주3, 의성1, 청송4, 청도5, 고령2, 성주2, 칠곡1, 예천1, 울진1, 울릉2	
		장 애 인	5명	안동1, 상주1, 영양1, 영덕2	
		저소득층	1명	청도1	
	환 경(일반환경)		25명	김천2, 안동2, 구미2, 영주3, 영천4, 상주1, 의성3, 영덕1, 청도1, 고령2, 예천1, 봉화1, 울릉2	
	시 설	도시계획	10명	포항2, 김천2, 상주1, 문경2, 의성2, 예천1	
		일 반 토 목	일 반	114명	포항5, 경주10, 김천9, 안동10, 구미4, 영주7, 영천12, 상주5, 문경3, 경산8, 의성7, 청송4, 영양2, 영덕4, 청도4, 고령2, 칠곡4, 예천1, 울진8, 울릉5
				1명	칠곡군의회1
			장애인	1명	경산1
			저소득층	1명	상주1
		건 축	일 반	60명	포항5, 경주8, 김천7, 안동5, 영천5, 상주3, 문경2, 의성3, 청송2, 영덕3, 청도6, 고령2, 봉화2, 울진4, 울릉3
			장애인	1명	상주1
	지 적	14명	경북도1, 안동2, 구미1, 영천1, 상주1, 의성2, 청송1, 봉화1, 울진2, 울릉2		
	방재안전(방재안전)		11명	구미1, 영주1, 상주1, 문경1, 경산1, 의성1, 청송1, 봉화1, 울진1, 울릉2	
	방송통신(통신기술)		18명	경북도3, 포항2, 경주1, 안동2, 구미1, 영주1, 상주1, 문경1, 청송1, 영양1, 영덕1, 울진1, 울릉2	
			2명	상주시의회1, 예천군의회1	
	시설관리 (시설관리)	일 반	1명	영주1	
보훈청추천		4명	경북도2, 의성1, 울진1		
운 전 (운 전)	일 반	21명	포항4, 경주4, 안동2, 구미2, 영주1, 영천1, 상주1, 문경1, 청송3, 청도1, 울릉1		
		3명	의성군의회1, 고령군의회1, 울진군의회1		
	보훈청추천	13명	포항1, 김천3, 구미1, 영천1, 청송1, 영양1, 영덕2, 청도1, 성주1, 울릉1		

## 나.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계급	직렬(직류)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계			46명	
7급	행정 (일반행정)	일반	14명	경북도4, 경주1, 김천1, 안동1, 구미1, 영천1, 상주1, 문경1, 의성1, 청도1, 예천1
		장애인	2명	청송1, 영덕1
지도사	농촌지도	농업	21명	포항1, 안동3, 문경3, 경산1, 의성1, 청송1, 영양2, 고령2, 칠곡2, 울진3, 울릉2
		원예	4명	안동1, 의성2, 예천1
		축산	1명	경북도1
		농업기계	1명	예천1
		농촌생활	3명	구미1, 영주2

## 2 시험과목

### 가.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 비공개 시험과목 : 파란색 글자

계급	직렬(직류)		시험과목	
8급	간호(간호)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보건진료(보건진료)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지역사회간호	
9급	행정(일반행정)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세무(지방세)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전산(전산)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사회복지(사회복지)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서(사서)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속기(속기)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방호(방호)	필수(3)	<b>국어, 한국사, 사회</b>	
	공업	일반기계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농업기계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b>농업동역학개론, 농작업기계학개론</b>
		일반전기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일반화학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농업	일반농업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축산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b>가축사양, 가축육종</b>	

계 급	직 렬(직 류)		시 험 과 목	
9급	녹 지	산림자원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립, 임업경영
		산림보호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립, <b>산림보호</b>
		조 경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b>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b>
	해양수산	일반해양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b>해양학개론, 해양조사방법론</b>
		일반수산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b>수산일반, 수산경영</b>
		선박항해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b>항해, 선박운용</b>
	보 건(보 건)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환 경(일반환경)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시 설	도시계획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b>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b>
		일반토목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 축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 적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방재안전(방재안전)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방송통신(통신기술)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시설관리(시설관리)	필수(3)	<b>국어, 한국사, 사회</b>	
운 전(운 전)	필수(3)	<b>국어, 한국사,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b>		

## 나.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 비공개 시험과목 : 파란색 글자

계 급	직 렬(직 류)		시 험 과 목	
7급	행 정(일반행정)	필수(6)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지도사	농촌지도	농 업	필수(7)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생물학개론, <b>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b>
		원 예	필수(7)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생물학개론, <b>재배학, 원예학, 농촌지도론</b>
		축 산	필수(7)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생물학개론, <b>가축사양학, 가축번식학, 농촌지도론</b>
		농업기계	필수(7)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물리학개론, <b>농업기계학, 농업시설공학, 농촌지도론</b>
		농촌생활	필수(7)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b>생활과학학, 농촌사회학, 식품영양학, 농촌지도론</b>

※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의 시험문제는 공개하며, 경상북도인사위원회 자체출제 과목의 시험문제는 비공개합니다.

※ 필기시험 문제의 경우, 해당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유효한 법령, 고시, 판례 등을 기준으로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과목 또는 문항에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한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 3

### 시험방법

####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1)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4지 택일형(문항당 1분 기준)
- 2)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총득점이 높은 순
  - ※ 합격자 결정 방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결정합니다.
  -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인성(역량)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일정 등 세부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할 예정입니다.

####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1)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2) 면접시험 평정결과(우수, 보통, 미흡)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며, 평정등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수 등급 : 합격. 다만 “우수”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 보통 등급 :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 미흡 등급 : 불합격
- ※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추가면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4

### 응시자격

#### 가. 공통 응시자격

-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제66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기준일 :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1. 공공기관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을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기존일 현재 법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 개정된 법령을 적용합니다.

## 2) 거주지 제한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합니다.

1.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4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아래의 경우 표와 같이 별도의 응시요건을 적용합니다.

시 험 명	직 렬(직 류)	임용예정 기 관	응 시 요 건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b>9급 행정(일반행정)</b> (일반, 장애인, 저소득층)	청송,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청송군의회, 영양군의회, 영덕군의회, 봉화군의회	2024년 1월 1일 이전까지, 해당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 거주지 요건 확인 기준

1.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사·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예시 ①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시행 2023.7.1.」에 따라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었으므로 종전 **경상북도 군위군에 거주한 기간은 경상북도 거주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구광역시 거주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②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시행 1995.3.1.」 제9조에 따라 달성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었으므로 종전 **경상북도 달성군에 거주한 기간은 경상북도 거주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구광역시 거주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2. 거주지 요건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3.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3) 응시연령

계 급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7·8·9급 및 지도사	18세 이상	2006. 12. 31. 이전 출생자



**나. 자격(면허)증 제한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유효한 것)**

시험명	계 급	직렬(직류)	해당 자격(면허)증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8급	간 호 (간 호)	·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 조산사, 간호사
	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1·2·3급
		사 서 (사 서)	·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 한글속기 1·2·3급
		해양수산 (선박항해)	· 기술사(조선) · 기사(조선, 항로표지) ·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 항해사 1급 내지 6급
		시 설 (지 적)	·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운 전 (운 전)	· 제1종 대형운전면허

**다. 장애인 구분모집**

-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라. 저소득층 구분모집**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단, 수급자 및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합산하여(중간 공백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도 응시 가능

2)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기간의 연속성을 인정합니다.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지원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기간의 연속성을 인정]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지원기간 명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지원)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수급자(지원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수급자(비지원대상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마.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훈청에서 추천하는 취업지원대상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응시희망자는 2024. 2. 29.(목)까지 해당 지방보훈청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3) 보훈청 추천과 별도로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개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4)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실시일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 필기시험 실시일을 포함한 3일 이내(2024. 6. 22. ~ 6. 24.)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가산비율·보훈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며, 잘못 입력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시험일정

시험명	접수기간	취소기간 (추가취소기간)	응시료 출력	구분	시험장소 공공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3. 25. ~ 3. 29.	3. 25. ~ 4. 1. ( 6. 3. ~ 6. 5.)	6. 7.이후	필기시험	6. 7.	6. 22.	7. 18.
				면접시험	7. 18.	8. 5. ~ 9. 6.	9. 20.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 서류 제출기간					3. 25. ~ 3. 29.	
	가산점 등록기간(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가산대상 자격증)					6. 22. ~ 6. 24.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7. 22. ~ 7. 26.	7. 22. ~ 7. 29. (10. 14. ~ 10. 16.)	10. 18.이후	필기시험	10. 18.	11. 2.	11. 21.
				면접시험	11. 21.	12. 4. ~ 12. 6.	12. 18.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 서류 제출기간					7. 22. ~ 7. 26.	
	가산점 등록기간(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가산대상 자격증)					11. 2. ~ 11. 4.	

※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등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s://www.gb.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서류제출 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됩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하여 처리단계별로 안내하며,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1522-06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응시수수료 결제완료 등)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2)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24시간(단, 시작일 09:00부터, 마감일 18:00까지)

3) 응시수수료(7급 및 지도사 7,000원, 8·9급 5,000원) 및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응시원서 제출일 당시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은 향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에 따라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응시수수료 납부 후 개인별 환급)이며, 증빙서류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원서접수 시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은 규격 3.5cm × 4.5cm(해상도 100dpi 이상)의 상반신 사진으로, 응시자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특히,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배경사진 등은 사용불가)

**나. 접수 시 유의사항**

- 1)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1개의 임용예정기관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하며, 임용예정 기관별로 선발된 후 임용됩니다.
- 2)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17개 시·도 중복접수 제한)
- 3) **장애인 등 응시자는 본인의 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편의지원 신청은 원서접수 시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하며 증빙서류를 경북도청 인사과 인재채용팀으로 우편 제출하여야 합니다.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1]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 접수기간에는 입력사항(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가산대상 자격증은 필기시험 실시일을 포함한 3일 이내 등록 및 수정 가능)
- 5) 취소기간(추가 취소기간 포함)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할 경우 응시수수료를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6) 응시표는 시험장소 공고일부터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7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한함)**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 [붙임3]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과목 대체】 참고**

구 분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IBT				
일 반	530	71	700	340	65 (레벨 2)	625
청각장애인	352	-	350	204	-	375

※ 청각장애의 정도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 이거나,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위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1) 2019.1.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실시일 전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2) 2019.1.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필기시험 실시일 전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3)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FL, TOEIC,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를 통해 사전등록 해야 합니다.  
 ※ 사전등록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4)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다. 성적 제출방법

- 1) 응시자는 사전등록 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 2)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제출 마감일까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등록기간[2024. 10. 28.(월) ~ 11. 1.(금)]내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 “능력검정시험 성적제출” 메뉴에서 성적을 등록해야 합니다.**

# 8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한함)

가. 기준점수(등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 [붙임3]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과목 대체】 참고

##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1) 필기시험 실시일 전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2) 국사편찬위원회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며,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다. 성적 제출방법

- 1)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 2)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제출 마감일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등록기간[2024. 10. 28.(월) ~ 11. 1.(금)]내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 “능력검정시험 성적제출” 메뉴에서 성적을 등록해야 합니다.**

## 9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 상 :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

※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할 경우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 수에 -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 다만,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제1·2차 시험에서 추가 합격된 인원의 범위 내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어느 한 성(性)을 추가 선발하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초과합격제

가. 대 상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나. 실시방법

- 1) 임용예정기관별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자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2) 초과합격제 적용으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하였을 경우 다음연도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 초과합격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자세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1 가산점 적용

###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의 가산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 ~ 마' 참고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실시일 전일까지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2)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3)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보훈상담센터 ☎1577-0606)

### 다.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실시일 전일까지 의사상자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와 그 배우자 또는 자녀
- 2)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3) 의사상자 등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의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 또는 시·군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 의사상자 등 가산점 대상자가 '나' 항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라.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실시일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행정직군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직류)	가산대상 자격증	가산비율
행정(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	5%
세무(지방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사회복지)	변호사	

※ 전산직렬의 경우, 기술직군 자격증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합니다.

2) 기술직군·지도직(자격·면허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 제외)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지도사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합니다.

※ 직렬(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는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7의4]에 의하며, **[붙임2] [가산점 적용 및 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10% 또는 5%) 또는 의사상자 등 가산점(5% 또는 3%)과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5% 또는 3%)은 각각 하나씩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2)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실시일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 필기시험 실시일을 포함한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s://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며, 잘못 입력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산비율·보훈번호/의사상자 등은 가산비율·의사상자 증서번호 입력

3) 가산점 등록기간

시험명	등록기간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2024. 6. 22.(토) ~ 6. 24.(월)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2024. 11. 2.(토) ~ 11. 4.(월)



## 12 전출제한 임용예정기관

가. 5년 전출제한 :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진군 / 청송군의회, 영양군의회, 영덕군의회, 봉화군의회, 울진군의회

나. 3년 전출제한 : 그 외 임용예정기관

※ 전출제한은 임용예정기관에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3 응시자 유의사항

가. 필기시험 문제의 경우에는 해당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유효한 법령, 고시, 판례 등을 기준으로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과목 또는 문항에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시 험 명	필기시험일	출제 기준일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2024. 6. 22.	2024. 4. 30.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2024. 11. 2.	2024. 9. 30.

나. 응시자는 공고문, 응시표, 답안지 등에서 정한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응시자격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은 경상북도인사위원회에서 별도 공고하는 장소에서 실시됩니다.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바. 부정행위자 등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사.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3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 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아. 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된 문제에 한하여 공개하며, 그 밖의 모든 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자.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s://www.gb.go.kr>) - '시험정보'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차. 인터넷 응시원서 등에 해당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등을 허위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확인 시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명 대상자는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s://www.gb.go.kr>) - '시험정보'란에 공고할 예정이며,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 카. 기타 시험관련 사항은 경상북도 인사과 인재채용팀(☎054-880-4583~7),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s://www.gb.go.kr>) '시험정보' - 질의/응답(Q&A)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1522-06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